

6·25전쟁 이전 김일성의 문화유산 보호 ‘령도’ 서사 구축 고찰*

남보라**

초록 본 논문은 북한 정권 수립 초기인 해방 직후부터 6·25전쟁 이전까지의 문화유산 보호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후대에 구축된 김일성의 ‘령도’ 서사와의 간극을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북한은 2012년 「문화유산보호법」 제정 이후 무형문화유산(북: 비물질문화유산)을 포함한 ‘민족유산’ 보호관리 정책을 강화하며, 그 기원을 해방 직후 김일성의 ‘령도’와 접목하여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북한의 주장을 6·25전쟁 이전에 생산된 문헌과 후대의 문헌을 비교 분석하여 북한이 문화유산 보호 서사를 어떻게 재구성하였는지 규명하였다.

당시 문헌 내 북한 정권 수립 초기 보호활동은 유형문화유산에 대한 법규를 제정하고 관리 조직을 구성하는 등 유형문화유산 중심의 법적·행정적 조치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김일성의 공개적인 지도에 관한 내용은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북한은 박물관 창립일을 김일성 현지도로 날짜로 소급 수정하거나, ‘청암동토성’의 보존 일화를 발굴하여 김일성을 ‘문화유산의 수호자’로 형상화하였다. 또한, 김일성 ‘로작’의 추가 공개나 개작은 ‘민족유산’ 보호관리 정책의 역사성과 권위를 부여하는 작업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김일성의 문화유산 보호 ‘령도’ 서사는 과거 미화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김정은 시대 「민족유산보호법」과 ‘민족유산’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선전하기 위한 역사적 토대 구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김일성 ‘령도’ 서사, 북한 문화유산 정책, 민족유산, 「문화유산보호법」, 「민족유산보호법」, 사료 비판

* 이 논문은 202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의 한국학기초자료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25-CDM-1240002).

**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연구교수

1. 서론

북한은 문화유산의¹ 보호를 위한 법규를 제정하고 관련 기관을 설립하여 정권 수립 초기부터 “민족의 역사와 문화전통을 길이 전해가도록 하”었다고² 주장하며, 이를 통해 민족적 자부심을 선전한다. 이러한 선전은 북한이 유네스코(UNESCO)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 제출한 2014년의 정기보고(Periodic Report)의 ‘보고서 요약’(A.6. Executive summary of the report)에서 공식화되었다.³

하지만 “1945년 해방 이후부터 국가 정책으로 무형문화유산뿐만 아니라 유형문화유산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다양한 국가기관을 설립하여 국가적, 전인민적 노력으로 보호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는⁴ 북한의 2014년 정기보고의 주장처럼 해방 직후부터 유·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활동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

북한에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법적·행정적 보호관리는 2012년에 제정된 「문화유산보호법」을 통해 본격화되었다.⁵ 그러나 해방 직후 북한의 문

1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된 「국가유산기본법」에서는 ‘문화유산’을 ‘유형의 문화적 유산’으로 정의하지만, 본 논문의 ‘문화유산’은 ‘유·무형’을 모두 포함하는 『표준국어대사전』의 “다음 세대에 계승·상속할 만한 가치를 지닌 과학, 기술, 관습, 규범 따위의 문화적 소산”(「1」)을 의미한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5. 11. 1., <https://stdict.korean.go.kr/>).

2 김찬홍(2016), 「새 조국건설시기 역사박물관들을 창설하고 대중교양거점으로 튼튼히 꾸리기 위한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 『민족문화유산』 2016-2, p. 4.

3 UNESCO(2014), *Periodic report No. 01040/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 2.

4 “The DPRK endeavors to safeguard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 as well as tangible heritage in its territory by the policy of state ever since its liberation in 1945. It established a variety of state agencies and pushes forward the safeguarding as a nationwide and all-people involving effort [UNESCO (2014), p. 2].”

5 북한은 2012년 기존의 「문화유물보호법」(1994년 제정)을 폐지하고 「문화유산보호법」을 제정하여 유형문화유산인 ‘물질문화유산’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유산인 ‘비물질문화유산’까지 포괄하여 보호하였다. 이후, 2015년 「민족유산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문화유산보호

헌 속에 확인된 법규나 보호 활동이 대부분 유형문화유산에 국한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당시와 현재 북한이 주장하는 사실과의 괴리가 존재한다. 따라서 무형문화유산 보호관리 등 북한 문화유산 분야의 최근 변화를 이해하려면 현재 정책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정권 수립 초기 유·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북한 정권 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북한 문헌을 분석하여, 북한이 김일성 ‘로작’을 통해 해방 직후부터 6·25전쟁 이전 시기 문화유산 보호관리의 서사를 ‘재구성’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⁶ 분석 대상은 6·25전쟁 이전에 발간된 김일성의 연설·담화 등과 같은 주요 ‘로작’과 신문, 문화유산관련 연속간행물 등이다. 아울러 이 시기를 다룬 후대의 북한 문헌도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또한, 김일성 저작물은 판본별 추가된 문건이나 수정된 내용 등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북한연구방법론』과⁷ 『북한현대사 문헌연구』에서⁸ 제시된 사료분석

법」은 폐지되었고, 현재는 ‘민족유산’을 ‘물질유산, 비물질유산, 자연유산’으로 구분하여 보호관리하고 있다.

- 6 선행연구로는 해방 직후 시기를 포함하여 북한의 문화유산 보호관리 정책의 역사적 사실과 담론의 실증적 분석에 중점에 주력한 연구들이 있다[권혁희(2021), 「북한의 문화유산 담론의 창출과 변화: 북한 체제 성립 초기부터 1970년대까지를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17-1; 남보라(2015), 「국가건설과정의 북한 문화유산관리 연구: 1945~1956년을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류승주(2022), 「해방 직후 북한 문화유산 보존 사업과 조선물질문화유물조사보존위원회」, 『한국근현대사연구』 103]. 아울러 최고지도자의 ‘로작’을 분석 대상에 포함한 연구는 ‘로작’과 법령을 통시적으로 분석한 김용환·전영선의 연구와 무형문화유산 분야에서 최고지도자 ‘령도업적’의 계승과 김정은 업적 구축을 살펴본 남보라의 연구도 있다[김용환·전영선(1997),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에 대한 연구: 김일성 부자의 교시와 법령을 중심으로」, 『민족학연구』 2, 1997; 남보라(2024), 「북한의 무형문화유산 보호관리 연구: 김정은 시기 ‘비물질문화유산’ 제도화 과정을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본 연구는 해방 직후 문화유산 보호관리의 역사적 사실이 북한의 후대 문헌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재구성’되었는지 분석하는 데 집중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연구의 시기적 범위를 6·25전쟁으로 제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7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위음(2003), 『북한연구방법론』, 서울: 도서출판 한울.

- 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연구처 위음(2001), 『북한현대사 문헌연구』, 서울: 백산서당.

방법을 적용한 것이다.

2. 6·25전쟁 발발 이전 북한 문헌 속 문화유산 보호관리

북한에서 문화유산 보호관리와 관련하여 처음 제정된 법규는 총 11개 조문으로 구성된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이하 「보존령」으로 칭함)이다.⁹ 1946년 4월 29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일성과 서기장 강량욱”의¹⁰ 명의로 반포된 이 법규는 이름에서도 드러나듯 일제강점기에 제정된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이하 「조선보존령」으로 칭함)을 토대로 수정한 것이었다. 일제강점기의 법규를 토대로 하였지만 관리감독의 주체를 ‘조선총독’에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변경하였고, 내용도 일부 수정하였다. 반면 미군정에서는 군정법률 제21호(1945년 11월 2일 제정) 「이전 법령 등의 효력에 관한 건」에¹¹ 의해 「조선보존령」이 유지되었다. 따라서 이는 유형문화유산과 자연유산에 대한 보호의 주체를 남한보다 먼저 법규를 통해 명확하게 규정하여 “북한이 문화유산 보호관리에 있어 남한보다 앞서 있다는 신념이 시작된 지점”이면서,¹² 당시 신탁통치에 대한 상황을 고려하면 미군정하의 남한과는 다른 ‘국가건설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보존령」은 유형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보존 대상을 규정하고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것(제1조)을 명시하였

9 하위 법규로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시행규칙」과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시행수속」이 있다.

10 북조선임시위원회(1947), 『법령공보』 임시증간 8(1947. 6. 20.), pp. 14-15.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 12. 31., <https://law.go.kr/>

12 남보라(2024), p. 78.

고,¹³ 지정된 유산 혹은 그에 준하는 유산의 해외나 타도로의 반출·파괴·훼손·은닉을 금지하였다(제2조). 유산의 보존과 현상변경 및 발굴, 조사 등에 관한 사항(제3조~제7조)과 보호·관리의 위임(제8조),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사항(제9조~제11조)으로 구성되었다. 「조선보존령」의 24개 조 내용 중 ‘조선총독부 보물명승고적천연기념물보존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자문을 담당할 조직이 없어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인 소유와 사찰 소유 등 소유와 관련한 조문도 포함되지 못하였는데, 이는 유산 개인 소유의 폐단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골동취미’와 ‘매국적 골동상’을 통해 유산을 사유화하고 도굴과 판매를 통해 일제 특권계급의 독점물이 되었다고 보았기에 ‘인민’의 유산이 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추정된다.¹⁴ 이 법규는 1949년 「물질문화유물 보존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기 전까지 ‘북조선’ 내 유형문화유산 보호관리의 법적 근거가 되었고, 문화유산 보호관리 조직 결성, 문화유산 조사 및 수리,¹⁵ 각지 박물관 설립 추진의 토대가 되었다.¹⁶

문화유산 보호관리를 위한 조직은 중앙에 전문적인 조직을 구성하기에

13 북조선임시위원회(1947), p. 14.

14 「사설 고적보존사업을 강화하자」, 『민주조선』 1948. 4. 3.[김광운(2018), 『북조선 실록 년표와 사료』 18(1948.02.16.~1948.04.05.), 서울: 코리아 데이터 프로젝트, pp. 689~691 재인용]; 한홍수, 「물질문화유물보존사업에 대하여」, 『로동신문』 1949. 8. 23.

15 「민주 발전된 제반 문화시설, 북조선인민위원회 사회교육의 약진상」, 『민주조선』 1947. 8. 13.[김광운(2018), 『북조선 실록 년표와 사료』 14(1947.08.08.~1947.09.17.), 서울: 코리아 데이터 프로젝트, pp. 130~132 재인용]; 김재호(1948), 「북조선 고적 보존 사업」, 『순간북조선통신』 1948 사월상순호, pp. 14~15; 「확대되는 도서관 박물관 사업도 활발」, 『로동신문』 1947. 9. 3.[김광운(2018), 『북조선 실록 년표와 사료』 14(1947.08.08.~1947.09.17.), pp. 512~513 재인용].

16 북조선인민위원회 교육국과 각 도 인민위원회 교육관련 부서에서 박물관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였고, 각지에 설립된 박물관은 지역적 특성에 맞추어 문화유산을 조사하고 유물을 수집하였다. 해방 직후 창설된 ‘평양시박물관’은 1946년 ‘북조선국립중앙박물관’으로 개편되어 역사 유물에 대한 ‘조사·수집·전시 사업’을 담당하였고, 1948년에는 ‘김일성장군실, 민주전선실, 소련군대실’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락랑시대 고분발굴조사’ 등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평양의 박물관은 ‘청진, 함흥, 묘향산, 신의주’ 등 지방 박물관 설립의 기준이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남보라(2024), pp. 82~84 참조.

앞서 각 도에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보존회’(이하 ‘보존회’) 혹은 ‘고적 보존위원회’를 결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보존령」이 수록된 『법령공보』(임시증간 8, 1947년 6월 20일)에서 ‘참고’로 공개된 「○○도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보존회규약」이¹⁷ 있었던 것으로 보아 각 도에 ‘보존회’를 설치할 것을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946년 12월 23일에 있었던 제1회 ‘북조선 군중문화 관계자 회의’의 결정서 내용 중 “6. 역사가 고고학자 기타 전문가 중심으로 적당한 기관을 조직하여 고대문화의 보존 수리 발굴 연구하게 할 것은 교육국에 건의한다.”는¹⁸ 문장을 볼 때, 전문적인 조직 구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후, 1947년 1월 13일에 ‘평남도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회 결성회’ 진행을 보도한 『로동신문』 기사와¹⁹ 『순간북조선통신』 1947년 9월 상순호의²⁰ 내용을 볼 때 1947년에는 각 도에 ‘보존회’나 ‘고적 보존위원회’를 결성하여 각 지방에 문화유산 보호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조직을 마련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앙의 전문적인 조직은 1948년이 되어서야 추진되었다. 1948년 2월 29일 북조선인민위원회 결정 제119호 「북조선중앙고적보존위원회조직에 관한 결정서」에서²¹ 1948년 3월 10일까지 ‘북조선중앙고적보존위원회’의 설치와 1948년 4월 말까지 “북조선의 보물고적명승 급 천연기념물 대장을 작성하여 북조선인민위원회위원장의 비준”받을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17 북조선임시위원회(1947), pp. 19-20.

18 「정치 경제 진로에 발 맞춰 문화적으로 개척 로력」, 『로동신문』 1946. 12. 25.[김광운(2018), 『북조선 실록 년표와 사료』 7(1946.11.29~1946.12.31)], 서울: 코리아 데이터 프로젝트, pp. 578-579 재인용].

19 「찬란한 조선민족 문화 예술을 보존 평남도에 보존회 결성」, 『로동신문』 1947. 1. 13.[김광운(2018), 『북조선 실록 년표와 사료』 8(1947.01.01.~1947.02.04.), 서울: 코리아 데이터 프로젝트, pp. 264-265 재인용].

20 (1947), 「박물관 도서관 및 고적보존사업의 개관」, 『순간북조선통신』 1947 구월상순호, pp. 14-15.

21 북조선인민위원회(1948), 『법령공보』 47(1948. 3. 15.), pp. 8-9.

1948년 3월 3일 교육국 명령으로 「북조선중앙고적보존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였고,²² 27인의 ‘북조선중앙고적보존위원회명부’를 공개하였다.²³

이와 같은 규정을 만들어 ‘북조선중앙고적보존위원회’가 조직되었으나, 실질적인 활동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약 8개월 만에 해체되었다. 1948년 11월 1일 내각결정 제58호 「조선물질문화유물조사보존위원회에 관한 결정서」에서²⁴ “북조선고적보존위원회사업을 1948년 11월 5일 이내로 인수할 것”을 명시하였고, 이에 따라 ‘북조선중앙고적보존위원회’를 이어받은 내각 직속 ‘조선물질문화유물조사보존위원회’(이하 ‘물보’로 칭함)가 구성되었다.²⁵

‘북조선중앙고적보존위원회’와는 달리 위원회 명칭에서 드러나듯 ‘물보’는 ‘명승지 및 천연기념물’에 대한 사업은 ‘각 도 및 평양특별시인민위원회’에 이관하여 ‘물질문화유물’, 즉 유형문화유산에 대한 사업을 담당하는 전문적인 조직으로 자리하였다. 또한, ‘문화선전성’에서 관장하던 ‘력사박물관’에 대한 사업도 ‘물보’가 담당하였으며, ‘북조선중앙고적보존위원회’와는 달리 민속에 대한 조사와 연구도 진행할 수 있는 부서를 설치하여 ‘원시사 및 고고학부, 미술 및 건축부, 민속학부, 박물관지도부, 총무부’와 같이 총 5개 부서로 구성하였다.

내각결정으로 ‘물보’의 조직을 공표한 후 1948년 11월 5일 내각지시 제 49호 「조선물질문화유물조사보존위원회임명에 관하여」를 통해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상무위원과 10명의 위원을 임명하였다.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조선물질문화유물조사보존위원회에 관한 결정서」가 발표된 직후 이루어

22 북조선인민위원회(1948), pp. 10-11.

23 북조선인민위원회(1948), p. 11.

2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사무국(194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공보』 1948-2(1948. 12. 20.), pp. 46-47.

25 ‘북조선중앙고적보존위원회’와 ‘물보’의 주요 사업 및 인적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류승주(2022), pp. 208-219 참조.

어졌지만,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그 이듬해인 1949년 8월 23일 내각 결정 125호 「조선물질문화유물조사보존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통해 규정하였다.²⁶ 이 규정을 통해 ‘물보’는 “조선의 물질문화유물의 수집 보존관리 및 그의 과학적 조사연구와 이에 대한 인식을 보급시키며 역사 민속학 미술사 등 각종 박물관사업”의 관리지도가 목적임을 밝혔다.²⁷ ‘물보’ 수립은 「보존령」에서 규정하는 보물과 고적의 유형문화유산과 명승지와 천연기념물의 자연유산을 서로 다른 조직에서 보호관리하게 되어 보호관리 체계가 ‘이원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²⁸

‘물보’의 설치는 “정강에 명시된 민족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이사업을 더욱 확대강화하기위한 새로운 대책”이었으며,²⁹ 「물질문화유물 보존에 관한 규정」은 “보물고적에 관한 조항을 폐지하고 새로히 개정한것으로써 종내 이 사업을 실시하여오든 과정에서 나타난 불충분한점 미비한점등을 시정하고 보충하게된 것”이었다.³⁰ 즉,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체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로 파악”할 수 있다.³¹

하지만 여전히 관리를 위해 보물과 고적으로 지정하는 형태는 유지되었다. 또한, 새로운 유물 발견에 관한 사항(제2조)이나 국외 반출 관련(제3조), 현상변경 및 보존에 영향을 주는 행위(제4조, 제5조), 위반 시 처벌(제8조)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보존령」과 그 하위법제인 「보존령 시행규칙」 및

2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사무국(194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공보』 1949-11(1949. 10. 10.), pp. 401-402.

2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사무국(1949), p. 401.

28 1949년 8월 2일 내각결정 제110호로 「물질문화유물 보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면서 ‘물보’가 ‘보존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물질문화유물보존에 관한 규정」 부칙에서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1946년 4월 29일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공포) 중 보물고적에 관한 조항은 이를 폐지한다.”라고 하여 유형문화유산과 자연유산에 대한 보호 법규와 관리 조직이 나누어지게 되었다.

29 리태진(1949), 「문화유물보존사업에 대하여」, 『문화유물』 1, p. 74.

30 리태진(1949), p. 74.

31 남보라(2024), p. 85.

「보존령 시행수속」에 있는 내용을 다시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유물 소유와 관련한 조항은 일부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보존령」이나 「물질문화유물보존에 관한 규정」 모두 소유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조선보존령」에서 「보존령」으로 넘어오면서 「조선보존령」의 개인 소유와 사찰 소유 등과 관련한 조문이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유물의 개인 소유를 장려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인이 소유한 유물을 ‘매매, 전당 또는 양여’할 때 ‘위원회의 허가’를 받을 것과 소유자의 보관과 관련한 조항(제7조)이 「물질문화유물보존에 관한 규정」에서 등장한 것은 북한 당국이 추진하고자 하였던 유산 개인 소유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이 소장한 유물의 재산적 성격의 소유관계 변경을 ‘위원회 허가사항’으로 규정하여 유물의 개인 소유를 어렵게 하고 사유화된 유물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법규 속에서는 문화유산 중 유형문화유산만이 보호관리의 대상이었다. 다만, ‘물보’의 조직 내 ‘민속학부’가 존재하여 ‘민속’이 ‘물보’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었으나, “‘민속’과 관련된 유산은 보존의 영역이 아닌 새로운 ‘민족문화’ 수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민속학’ 연구의 대상”으로³² 무형문화유산의 법적·행정적인 보호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러한 법규뿐만 아니라 당시 문헌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보호는 평양 정백리와 석암리의 ‘락랑고분’이나 안악 제1·2·3호 무덤 등과 같이 대다수 유형문화유산의 조사와 사찰이나 건조물의 보수 및 수리에 대한 것이었다.³³ 무형문화유산에 관련해서는 ‘봉산탈춤

32 남보라(2024), p. 87.

33 김재호(1948), pp. 14-15; 조선중앙통신사(1949), 『조선중앙년감-1949년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p. 137; 「락랑고분발굴 김일성대학사학과와 평양박물관 학술부」, 『로동신문』 1947. 6. 8.[김광운(2018), 『북조선 실록 년표와 사료』 12(1947.05.28~1947.07.02)], 서울: 코리아 데이터 프로젝트, pp. 130-131 재인용]; 「락랑고분에서 철기를 발굴」, 『로동신문』 1947. 6. 29.[김광운(2018), p. 615 재인용].

보존회’ 결성 보도³⁴ 등의 사례가 확인되지만, 이는 문화유산으로서 법적·행정적인 보호가 아니라 그 당대 예술의 일환으로 ‘민족문화’를 계승하는 차원의 조치였다.³⁵

3. 6·25전쟁 이전 김일성의 문화유산 관련 활동 일화 발굴

이처럼 북한은 해방 직후부터 6·25전쟁 발발 이전까지 문화유산 보호 관리를 위해 법제를 제정하고, 중앙 관리 조직을 구축하면서 보호대상이 되는 문화유산을 정립하고 조사·연구·수집·보존 등과 같은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활동의 토대에는 ‘쏘련의 군대’에 의한 해방 및 원조와 ‘김일성장군의 령도’ 아래 이루어졌다는³⁶ 찬양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문헌 속에서 김일성이 문화유산과 관련한 직접적인 활동에 관한 기록은 많지 않다. 그중 확인 가능한 사례는 1947년에 있었던 ‘략량시대 고분발굴 사업’이다. 해방 이후 북한에서 있었던 첫 발굴사업으로 여겨지는 이 사업의 발굴현장에 김일성이 방문하여 격려하였다는 것이다.

一九四七年 六月 一日부터 金日成大學歷사文學部와 中央博物館은 공동으로 樂浪時代古墳發굴事業을 開始하였다. 이古墳發굴事業은 金日成委員長 金科奉先生을 비롯하여 考古學者 黃오 都宥호氏等 其他 사계의 권위자를 망라한 여러인士들의 熱烈한 參加●에 進行되었다. (...) 金日成委員長께

34 「김장군의 포상금 전달식 봉산탈춤보존회 결성」, 『로동신문』 1946. 11. 26.[김광운(2018), 『북조선 실록 년표와 사료』 6(1946.10.17.~1946.11.28.), 서울: 코리아 데이터 프로젝트, p. 151 재인용].

35 남보라(2024), p. 76.

36 「남반부 문화유물 파괴락탈에 대하여 전국학술단체 사회단체 문화활동가들 항의성명」, 『로동신문』 1949. 9. 17.

서는 몸소 發掘現場에까지나와서 朝鮮古蹟문화의 좋은 계승發展을위하여 關係者들을 激勵하였고 이에至大한 關心을 가지고 事業의 將來發展에 대하여 指示 또는 質問하였다. 또 朝鮮考古學界의 權威者인 金料奉先生께서는 朝鮮古蹟문화의 좋은發揚 및 研究를위하여 무릇 五차에걸쳐 發掘現場에 참가하여指導하였다.³⁷

이처럼 당시 기록을 통해 김일성이 ‘락랑일대 고분발굴 사업’ 현장에 방문했다는 보도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은 후대 기록에서 하나의 현지도 사례로 언급될 뿐, 다양한 매체에서 선전 소재로 폭넓게 활용되지 못하였다. 또한, 전쟁 전 ‘안악 3호 무덤’과³⁸ 함께 『로동신문』에 보도되었던 유적이었지만, 당시 연속간행물이나 ‘유적 발굴 보고’ 시리즈에서 발굴보고는 확인되지 않으며 출토유물인 ‘거섭 3년명 칠반’에 대한 소개만³⁹ 확인될 뿐이다. 당시 김일성의 방문 사실이 확인된 ‘락랑일대 고분발굴 사업’은 현재에는 잊힌 사업이 되었다.⁴⁰

‘유일사상체계’와 주체사상 확립 이후, 문화유산 보호관리와 관련한 많

37 김제호(1948), p. 15; 원문을 그대로 옮겼으며, 판독이 불가능한 부분은 ‘●’으로 표기하였다. 인용문의 강조 표시는 필자가 한 것이다.

38 「찬란한 민족문화의 유물인 광대한 고구려벽화분 발굴, 황해도 안악군 통순면에서」, 『로동신문』 1949. 7. 16.

39 황옥(1957), 「거섭 3년명 칠반(居攝三年銘漆槃)」, 『문화유산』 1957-6, pp. 81-84.

40 북한이 1947년 ‘락랑일대 고분발굴 사업’을 김일성의 현지도 사례로 선전하지 않는 이유를 추정함에 있어, 해당 유적의 발굴보고가 확인되지 않고 북한 고고학 문헌에서도 이 유적의 정체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락랑구역 정백동 일대의 수많은 ‘락랑고분’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지만, 실증적으로 유적의 가치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김일성의 ‘령도’ 업적으로 선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현재 북한은 ‘락랑문화’를 “고조선말기의 주민들과 그 후예들이 창조한 문화”로 정의하고 있으며(「우수한 민속전통을 새겨주는 곳 락랑박물관을 찾아서」, 『로동신문』 2025. 2. 12.), 2022년 9월 ‘락랑박물관’을 준공하여 운영 중이다. 따라서 북한 내에서 ‘락랑문화’에 대한 연구성과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이 사례가 문화유산 보호나 ‘락랑문화’와 관련하여 김일성의 ‘령도’를 강조할 수 있는 일화로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

[표 1] 박물관 창립과 관련한 김일성 일화 수록 북한 문헌

「우리 나라 역사와 문화에 대한 교육교양의 기지」, 『로동신문』 1985. 11. 29.
「묘향산력사박물관창립 40돐 기념보고회 진행」, 『로동신문』 1987. 5. 11.
「조선미술박물관창립 40돐기념보고회 진행」, 『로동신문』 1988. 8. 26.
「참관기 열렬한 조국애를 심어주는 귀중한 재보 조선중앙력사박물관을 찾아서」, 『로동신문』 1995. 11. 29.
「조선미술박물관창립 50돐 기념보고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로동신문』 1998. 8. 12.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빛내여주시며」, 『로동신문』 2005. 12. 1.
「조선민속박물관 창립 50돐 기념보고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로동신문』 2006. 2. 11.
「묘향산력사박물관창립 60돐 기념보고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로동신문』 2007. 5. 1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선중앙력사박물관 현지도 60돐 기념보고회」, 『로동신문』 2007. 8. 18.
정혁철(2011), 「[백두산3대장군과 민족문화유산] 민족문화유산을 빛내이시는 길에서」, 『민족문화유산』 2011-1, p. 6.
「수령이 위대하여 민족의 유구한 역사가 빛난다 조선중앙력사박물관창립 70돐을 맞으며」, 『로동신문』 2015. 12. 1.
「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전하며」, 『통일신보』 2016. 2. 6.
김찬홍(2016), 「새 조국건설시기 력사박물관들을 창설하고 대중교양거점으로 튼튼히 꾸리기 위한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 『민족문화유산』 2016-2, pp. 4-6.
「묘향산력사박물관창립 70돐 기념보고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로동신문』 2017. 5. 3.
김영숙(2022), 「새 조국건설시기 력사박물관을 창설하도록 이끌어주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 『력사과학』 2022-4, pp. 3-4.

은 활동이 최고지도자의 ‘령도’에 기반을 둔 것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박물관’ 창립과 고구려 토성 보존과 관련한 일화가 북한 정권 초기 김일성의 문화유산 관련 활동으로 재구성되었고, 1980년대 이후 문헌에서 확인된다. 이는 그 당시에는 대중에 알려지지 않았던 일화이나, 새롭게 발굴되어

현재까지도 인민들에게 문화유산 보호관리에 있어 김일성의 역할을 선전하는 데 활용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박물관’ 창립과 관련한 김일성 일화가 수록된 북한 문헌을 살펴보면 ([표 1] 참조) 해방 직후 평양에 박물관을 창립하고 이후 지방에 설치한 박물관에 대해서 김일성의 ‘령도’에 의한 활동으로 선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내용은 1945년 12월 1일에 김일성이 직접 ‘조선중앙력사박물관’의 전신인 ‘평양시박물관’을 창립한 후, 1946년에는 ‘평양중앙박물관’으로, 1947년에는 ‘국립중앙력사박물관’으로 승격시킨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평양뿐만 아니라 도소재지를 중심으로 지방에 ‘박물관’을 창설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즉, 당과 김일성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해방 직후 박물관을 창립하여 ‘민족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는 사업’으로 진행하였고, ‘유물자료수집보존연구기지’이며 ‘대중교양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구축하였다는 의의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정권 초기 김일성에 의한 박물관 창립이라는 서사를 완성하기 위해 창립일이 수정되기도 하였다. 그 사례 중 하나가 ‘조선미술박물관’이다.⁴¹ ‘조선미술박물관’은 ‘사회주의 10월 혁명 40주년을 기념’하여 1957년 11월 8일에 ‘국립 중앙 미술 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개관하였다.⁴² ‘조선미술박물관’은 개관일과 창립일의 차이가 있다.⁴³ 『조선중앙년감』 내용을 살펴보면 전후 신설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⁴⁴ 1960년대에 들어 ‘1954년 9월 28일에 창립, 1957년에 처음 개관’되었다고 밝혔다.⁴⁵ 이러한

41 ‘조선미술박물관’은 처음 개관할 때는 ‘14세기부터 19세기’까지 ‘회화유산 400여 점’을 전시하였으나 후에는 해방 이후 미술유산까지 포함하였다.

42 「국립 중앙 미술 박물관 개관」, 『로동신문』 1957. 11. 9.

43 박윤희(2019), 「북한 조선미술박물관의 설립 경위와 초창기 전시 체제」, 『인문과학연구』 29, p. 138.

44 조선중앙통신사(1957), 『조선중앙년감(1957년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p. 110.

45 「조선 미술 박물관 창립 10주년을 기념」, 『로동신문』 1964. 9. 28.; 조선중앙통신사(1965), 『조선중앙년감(1965년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p. 182.

‘국립 중앙 미술 박물관’은 ‘내각 비준 제687호(1964년 8월 28일)’에 의해 ‘미술 박물관’으로 ‘개칭’되었다.⁴⁶ 이후, 북한 문헌 내에서 ‘조선미술박물관’으로 불리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1988년 8월 24일에 열린 ‘조선미술박물관 창립 40돐 기념보고회’에 대한 보도에서 기존에 알려진 ‘조선미술박물관’의 창립일과 다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근로자들을 교양하는데서 미술작품들이 노는 역할을 깊이 헤아리시고 1948년 8월 11일 조선미술박물관을 창립하여주시었으며 박물관이 나아갈 방향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시었다고 지적하시였다”는 내용을⁴⁷ 통해 ‘조선미술박물관’은 6·25전쟁 후가 아닌 해방 직후에 창립한 것으로 기록을 수정하였다.

1990년대 초까지는 ‘조선미술박물관’의 창립일에 대해서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91년에 발행된 『문학예술사전』에는 ‘김일성의 발기와 배려’에 의하여 1954년 9월 28일에 창설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⁴⁸ 『문학예술사전』의 설명 중 창립일은 혼선이 있었으나 ‘조선미술박물관’에 대한 김일성의 ‘령도’ 서사를 위해 1965년 3월 11일에 김일성의 현지지도를 통해 “미술박물관의 사업 방향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는 내용을 공개하였다.⁴⁹ 이후 북한 문헌에서는 1948년 ‘조선미술박물관’ 창립과 1965년 현지지도 등을 통해 박물관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김일성의 ‘령도’ 서사를 반복적으로 부각하였다.⁵⁰

46 조선중앙통신사(1965), p. 181.

47 「조선미술박물관창립 40돐기념보고회 진행」, 『로동신문』 1988. 8. 26.

48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1991), 『문학예술사전(중)』, 평양: 과학사전출판사, p. 503.

49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1991), p. 503.

50 「시대를 빛내이는 우수한 미술재보들 조선미술박물관을 찾아서」, 『로동신문』 1995. 3. 12.; 「조선미술박물관창립 50돐 기념보고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로동신문』 1998. 8. 1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선미술박물관 현지지도 40돐 기념보고회 진행」, 『로동신문』 2005. 3. 12.; 「조선미술박물관창립 60돐 기념보고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로동신문』 2008. 8. 14.; 「우리 나라 미술의 보물고에 깃든 불멸의 업적 길이 빛나리,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미술박물관을 현지지도하신

‘묘향산력사박물관’의 경우도 1980년대에 창립일이 언급되면서 창립일과 개관일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묘향산박물관’은 ‘특수박물관’으로 1947년 10월 15일에 개관식을 진행하였다.⁵¹ 1947년 8월 13일 『민중조선』 기사를 보면 “불교 문화재가 특히 많은 묘향산 보현사에는 앞으로 특수박물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현재 그 사업에 착수”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나 당시 기록에서는 창립일에 관한 부분은 알 수 없었다.⁵²

1987년 5월 9일에 있었던 ‘묘향산박물관창립 40돐 기념보고회’를 통해⁵³ 1947년 5월에 창립하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으며, 1987년 5월 3일 『로동신문』 기사를 통해 1947년 5월 3일에 진행되었다는 묘향산에 대한 김일성의 첫 현지지도를 언급하여 해방 직후부터 김일성의 관심 속에 묘향산의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기 위한 ‘령도’를 강조하였다.⁵⁴ 1997년 5월 6일에 열린 ‘묘향산력사박물관창립 50돐 기념보고회’ 기사를 통해 김일성이 묘향산에 대해 처음 현지지도 했다는 1947년 5월 3일이 창립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⁵⁵ 이후 ‘묘향산력사박물관창립 60돐’과 ‘70돐 기념보고회’도 1947년 5월 3일 창립을 기념하여 묘향산에 박물관을 세울 수 있도록 지도한 김일성의 업적을 선전하였다.⁵⁶ 이밖에 김일성종합대학 박물관도

50돐을 맞으며, 『로동신문』 2015. 3. 1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미술박물관을 현지지도하신 50돐 기념보고회 진행」, 『로동신문』 2015. 3. 11.

51 「묘향산 박물관 개관」, 『로동신문』 1947. 10. 18.[김광운(2018), 『북조선 실록 년표와 사료』 15(1947.09.18~1947.11.05)], 서울: 코리아 데이터 프로젝트, p. 370 재인용]; 「고대 문화의 전당 묘향산박물관 개관, 각계 대표 참석 하에 력사적 개관식」, 『로동신문』 1947. 10. 24.[김광운(2018), pp. 370-372 재인용].

52 김재호(1948), pp. 14-15.

53 「묘향산력사박물관창립 40돐 기념보고회 진행」, 『로동신문』 1987. 5. 11.

54 「인민의 락원으로 꽃피는 묘향산」, 『로동신문』 1987. 5. 3.

55 「묘향산력사박물관창립 50돐 기념보고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로동신문』 1997. 5. 7.

56 「묘향산력사박물관창립 60돐 기념보고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로동신문』 2007. 5. 15.; 「묘향산력사박물관창립 70돐 기념보고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로동신문』 2017. 5. 3.

1949년 10월에 개관하였지만,⁵⁷ 후대에는 1946년에 창립한 것으로⁵⁸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박물관 창립에 대한 수정은 김일성의 ‘령도’가 해방 직후부터 있었다는 ‘명제’를 점진적으로 고착화하는 작업이었다. 결국 이는 문화유산 보호에 필요한 박물관을 김일성과 연결시켜 정권 수립 초기부터 이어진 문화유산 보호의 ‘령도’ 서사를 공고히 하고자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해방 직후 박물관 창립에서 김일성의 ‘령도’ 서사를 만드는 것과 함께 이 시기 김일성의 문화유산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일화로 발굴된 것은 ‘북조선김일성대학’(당시 명칭, 현재 김일성종합대학) 교사 기공식 후 확인된 고구려 토성을 보존하기 위해 교사 위치를 옮기도록 한 김일성의 지도이다. 김일성종합대학 교사 기공식 후 확인된 고구려 토성은 국보유적 제8호로 지정된 ‘청암동토성’으로⁵⁹ 평양시 대성구역 청암동에 위치한다. 이와 관련한 당시 기록은 현재 확인 가능한 공개 문헌 내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이후 195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청암동토성에 관한 연구성과를 소개하는 글에서는 김일성의 일화가 포함되어있지 않으나,⁶⁰ 청암동토성을 소개하거나⁶¹

57 한길언(1949), 「김일성종합대학박물관」, 『문화유물』 2, p. 66.

58 김영숙(2022), 「새 조국건설시기 역사박물관을 창설하도록 이끌어주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 『력사과학』 2022-4, p. 4.

59 ‘청암리성’ 혹은 ‘청암리토성’, ‘청암동성’으로 불리기도 한다.

60 황욱(1958), 「평양《청암리 토성》 부근에서 발견된 고구려 금동 유물」, 『문화유산』 1958-5, pp. 63-66; (1997), 「[발굴소식] 새로 발굴된 청암동토성」, 『조선고고연구』 1997-4, p. 43; 남일룡·최경찬(1998), 「청암동토성에 대하여 (1)」, 『조선고고연구』 1998-2, pp. 13-15; 남일룡·최경찬(2000), 「청암동토성에 대하여 (2)」, 『조선고고연구』 2000-1, pp. 12-15; 남일룡·최경찬(2001), 「청암동토성에 대하여 (3)」, 『조선고고연구』 2001-2, pp. 6-9쪽; 리광희(2004), 「청암동토성에서 새로 발견된 수기와와 연대」, 『조선고고연구』 2004-1, pp. 16-19; 남일룡(2011), 「새로 발굴된 청암동토성의 북쪽성벽」, 『조선고고연구』 2011-4호, pp. 4-8; 남일룡(2013), 「청암동토성에서 발굴된 고구려건축지와 건물벽화에 대하여」, 『민족문화유산』 2013-2, pp. 49-50.

61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1989), 『조선유적유물도감(3) 고구려편(1)』, 평양: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pp. 108-109; 본사기자(2002), 「청암동성」, 『민족문화유산』

김일성의 업적을 찬양하는 글에서는⁶² 이와 관련한 언급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암동토성’ 앞에 세워진 설명문에도 김일성이 1947년 9월 8일에 현지에 방문하여 “김일성종합대학 본청사의 위치를 옮기고 청암동토성을 보존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⁶³ 또한, 1992년에 발행된 『김정일 선집 1권』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수록된 김정일의 담화인 「력사유적과 유물보존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할데 대하여」에서도⁶⁴ 이 일화를 소개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방직후 김일성종합대학 청사를 건설할 때 처음에 정한 대학위치가 고구려의 토성자리라는것을 아시고 대학위치를 다른데로 옮기도록 하시였으며 몸소 현지에 나가시여 대학터전을 룡남산마루에 잡아주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언제나 문화유물보존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력사유적과 유물을 잘 보존하고 관리할데 대하여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고계십니다.⁶⁵

2002-4, p. 14.

62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빛내여주시는 길에서」, 『로동신문』 1991. 11. 12.; 「민족의 력사와 문화를 빛내여주시며」, 『로동신문』 2005. 12. 1.; 「민족문화유산을 빛내이시는 길에서」, 『로동신문』 2008. 6. 26.; 정혁철(2010), 「[백두산3대장군과 민족문화유산] 민족문화유산을 빛내여주신 불멸의 령도」, 『민족문화유산』 2010-2, p. 4; 리광철(2012), 「[백두산3대장군과 민족문화유산] 민족문화유물보존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민족문화유산』 2012-3, p. 3; 「평양의 력사유적을 찾아서 뜻깊은 사연을 안고있는 청암동토성」, 『통일신보』 2022. 7. 9.

63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2009), 『기록영화 위대한 력사 제21부, 유구한 민족사를 빛내이시여』, 평양: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 김정문(2011), 「고구려 청암동토성」, 『조선고고연구』 2011-3, p. 표지3(사진).

64 김정일(1991), 「력사유적과 유물보존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1964년 9월 16일)」, 『김정일 선집 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pp. 29-37.

65 김정일(1991), p. 36.

이와 같이 김정일의 담화는 김일성종합대학 건설 과정에서의 고구려 토성 보존 일화의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이 일화가 실재했던 것처럼 인식되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일화가 소개된 각 문헌의 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1947년 9월 7일 ‘김일성대학’ 기공식 다음날인 9월 8일에 김일성이 ‘대학 교사 터전’으로 정해진 ‘모란봉 동북쪽 대동강 기슭’에서 ‘고구려 토성’ 일부가 발견된 사실을 ‘력사학자’들에게 물었고, ‘력사학자’들과 현장을 찾아 토성을 확인한 후 “종합대학 위치로는 여기가 참 좋은곳이지만 토성 자리를 없애고 교사를 지을수는 없습니다. 종합대학의 위치도 중요하지만 토성도 보존하여야 합니다”라고⁶⁶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김일성종합대학이 위치한 ‘룡남산’ 자락으로 이전하게 된 것이라는 서사 구조를 띠고 있다.

‘청암동토성’의 어느 부분을 보고 고구려 토성의 잔재라고 판단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일제강점기인 1939년 10월 18일에 고적 제100호 ‘평양청암리성(平壤淸岩里城)’으로⁶⁷ 등록되었기 때문에 그 일대에 고구려 유적의 존재는 이미 확인된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문제발견→김일성의 가르치심→문제해결”로 구성된 이 이야기는 해방 직후부터 김일성이 ‘민족문화유물보존사업’에⁶⁸ 깊은 관심을 보이고, 혹은 “민족문화유산을 살려내며 빛내이시기 위한”⁶⁹ 김일성의 노력이 있었기에 그 토대 위에서 문화유산이 잘 보호될 수 있었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즉, 문화유산 보호관리에 있어 김일성의 ‘령도’와 ‘숭고한 업적’의 서사를 구축하기 위한 대표적인 일화가 되었다. 또한, 김정일의 「력사유적과 유물보존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할데 대하여」에서 확인할 수 있듯 해방 직후부터 김일성이 “문화유물보존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력사유

66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빛내여주시는 길에서」, 『로동신문』 1991. 11. 12.

67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관보』 3825(1939. 10. 18.), pp. 177-179.

68 리광철(2012), p. 3.

69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빛내여주시는 길에서」, 『로동신문』 1991. 11. 12.

적과 유물을 잘 보존하고 관리할데 대하여 간곡한 가르침”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존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질책의 근거로 활용되기도 하였다.⁷⁰

이와 같은 해방 직후 김일성의 문화유산과 관련한 지도와 ‘가르침’에 대해서 “민족문화유산을 력사학발전을 위하여 나서는 문제로만이 아니라 우리 인민들에게 애국주의와 자기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는데 이바지하는 중요한 문제로 보시였다”고 평가하였다.⁷¹ 이러한 김일성의 ‘령도’ 서사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개되지 않았던 당시 김일성의 현지도와 ‘로작’을 공개하거나, ‘로작’에 대한 개작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4. 해방 직후 문화유산 관련 김일성의 현지도와 ‘로작’

현재까지 공개된 6·25 이전 북한의 문헌자료에는 ‘락랑시대 고분발굴’ 현장에 다녀갔다는 기록을 제외하고 문화유산과 관련한 김일성의 현지도 활동은 확인되지 않는다. ‘묘향산력사박물관’의 창립과 관련하여 김일성의 ‘령도’ 서사를 구축하기 위해 1947년 5월 3일 묘향산을 방문하여 문화유산 보존과 박물관 설립에 관한 ‘가르침’을 주었다고 선전한 사례처럼 1980년대부터 차츰 해방 직후 문화유산과 관련한 김일성의 현지도 행적과 ‘로작’이 공개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05년에 발행된 『문화유산애호가들의 벗』의 ‘1. 백두산3대장군의 문화보존부문 현지도 주요 년표’를⁷² 통해서([표 2] 참조) 해방 직후 김일성의 문화유산과 관련한 현지도 활동으로 공식화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70 김정일(1991), p. 36.

71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빛내여주시는 길에서」, 『로동신문』 1991. 11. 12.

72 리철·리기웅·김명철(2005), 『문화유산애호가들의 벗』, 평양: 조선문화보존사, pp. 14-19.

[표 2] 해방 직후~6·25전쟁 전까지 김일성의 문화유산관련 현지도

날짜	백두산 3대장군 현지도			대상	출처
	김일성	김정숙	김정일		
1945. 10. 3.	●			대동문, 련광정, 을밀대, 청류정	2005
1946. 3. 2.	●	●	●	모란봉의 평양성, 칠성문, 을밀대, 현무문, 최승대, 청류정, 동암문, 평양시립박물관(현: 조선중앙력사박물관)	2005
	평양의 자랑인 모란봉을 잘 꾸려야 한다: 모란봉을 돌아보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1946년 3월 2일)				
1946. 4. 8.	●			모란봉의 영명사, 부벽루, 8각5층탑	2005
1946. 4. 17.	●			함경남도 함흥시 함흥성	2005
1946. 4. 중순		●	●	정방산 성불사, 정방산성 남문	2005
1946. 5. 6.	●	●	●	룡악산 룡곡서원과 법운암	2005
1946. 5.		●	●	모란봉의 칠성문, 평양성, 을밀대, 청류정	2005
1946. 7. 7.		●	●	칠성문, 을밀대, 련광정, 평양종각, 대동문, 평양시립박물관(현: 조선중앙력사박물관)	2005
1946. 9. 7.	●			모란봉의 칠성문, 을밀대, 영명사, 부벽루	2005
1946. 9.	●			1946년 9월 평양시 책임일군들을 부르시여 문화유적들을 복구하시고 잘 보존관리할데 대하여 교시	2009
1946. 10. 6.		●	●	모란봉의 칠성문, 을밀대, 현무문, 영명사	2005
1946. 10. 8.	●			평안북도 의주군 통군정	2005
1946. 10. 13.	●	●	●	황해북도 사리원시 정방산성, 황해남도 해주시 지환정	2005
1946. 11. 3.	●			평안남도 강서군 강서세무팀	2005
	강서고분은 우리 인민의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평안남도 강서군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1946년 11월 3일)				
1946. 11. 10.	●	●	●	황해북도 사리원시 정방산성, 성불사	2005

[표 2] 해방 직후~6·25전쟁 전까지 김일성의 문화유산관련 현지도(계속)

날짜	백두산 3대장군 현지도			대상	출처
	김일성	김정숙	김정일		
1947. 3. 8.		●	●	모란봉의 을밀대	2005
1947. 5. 3.	●			묘향산 보현사, 상원암, 축성전, 불영대, 5층탑, 보윤암, 극락전	2005
1947. 5. 11.	●			묘향산 축성전에 대한 교시	1982
1947. 5. 11.	●			묘향산 보현사	2005
1947. 6.	●			평안남도 강서군 강서세무덤	1982
1947. 6. 25.	●			평안남도 강서군 강서세무덤	2005
1947. 7. 10.	●			황해북도 사리원시 정방산성, 성불사	2005
1947. 7. 27.	●	●		평안남도 룡강군 부운사	2005
1947. 8. 10.	●			모란봉의 최승대	2005
1947. 8. 17.	●	●	●	모란봉의 을밀대, 청류정, 평양시립박물관(현: 조선중앙력사박물관)	2005
	국립중앙력사박물관 일군들과 한 담화(1947년 8월 17일)				
1947. 8. 하순	●	●		모란봉의 을밀대, 현무문, 최승대	2005
1947. 9. 8.	●			평양시 대성구역 청암토성	2005
1947. 9. 17.	●			평양시 락랑구역 락랑고분	2005
1947. 9. 23.	●			청진력사박물관	2005
1947. 9. 28.	●	●	●	강원도 고산군 석왕사, 고성군 신계사	2005
	금강산을 근로자들의 문화휴양지로 꾸리자: 외금강휴양소 일군들과 한 담화(1947년 9월 28일)				
1947. 12. 7.	●	●	●	평안남도 강서군 강서세무덤	2005
1948. 2. 22.	●			함경남도 함흥시 함흥본궁(당시 함흥력사박물관)	2005
1948. 4. 5.		●		모란봉의 을밀대	2005
1948. 4. 8.	●	●	●	룡악산 법운암	2005
1948. 4. 하순		●	●	모란봉의 평양성, 칠성문, 을밀대, 청류정	2005
1948. 5. 초		●		모란봉의 을밀대, 칠성문	2005

[표 2] 해방 직후~6·25전쟁 전까지 김일성의 문화유산관련 현지도(계속)

날짜	백두산 3대장군 현지도			대상	출처
	김일성	김정숙	김정일		
1948. 5. 9.	●			평안남도 성천군 성천객사(동명관)	2005
1948. 5. 16.	●			룡악산의 력사유적	2005
1948. 5. 30.	●			평양시 대성구역 대성산성	2005
1948. 7. 15.	●	●		평안남도 평원군 삼충사(훈련정)	2005
1948. 8. 14.		●		모란봉의 최승대	2005
1948. 8. 하순		●	●	모란봉의 평양성, 칠성문, 을밀대	2005
1948. 8. 21.	●			황해남도 해주시 수양산성, 부용당	2005
1948. 8. 22.	●			황해남도 벽성군 소현서원, 해주시 신광사	2005
1948. 9. 초		●		모란봉의 칠성문, 을밀대	2005
1948. 9. 30.		●	●	묘향산 보현사와 국립묘향산특수박물관	2005
1948. 10. 1.		●	●	묘향산 안심사, 상원암, 불영대, 보운암, 수충사	2005
1948. 10. 16.	●			강원도 고성군 신계사	2005
1949. 4. 10.	●			묘향산 보현사, 안심사	2005
1949. 6. 19.	●			황해북도 사리원시 정방산성, 정방산성 남문	2005
1949. 10. 12.	●		●	자강도 강계시 강계야사	2005
1949. 10. 15.	●		●	묘향산 보현사, 상원암, 묘향산력사박물관	2005
	민족문화유산을 잘 보존하여야 한다: 묘향산 박물관 및 휴양소 일군들과 한 담화(1949년 10월 15일)				
1949. 10. 16.	●			약산동대-천주사	1982
	●		●	평안북도 녕변군 룡승정, 천주사, 서운사, 철웅성	2005
	약산동대를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꾸리자: 평안북도 녕변군 책임일군 및 녕변중학교 학생들과 한 담화(1949년 10월 16일)				

[표 2] 해방 직후~6·25전쟁 전까지 김일성의 문화유산관련 현지도(계속)

날짜	백두산 3대장군 현지도			대상	출처
	김일성	김정숙	김정일		
1949. 11. 20.	●			황해남도 안악군 안악3호무덤	2005
	안악 제3호고분은 고구려의 력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귀중한 재보이다: 안악 제3호고분을 돌아보면서 황해도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1949년 11월 20일)				

출처: 1982: 조선중앙통신사(1982), 『조선중앙년감(1982년)』,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2005: 리철·리기웅·김명철(2005), 『문화유산애호가들의 벗』, 평양: 조선문화보존사.

2009: 리주현·한은숙(2009), 『조선고고학총서 1 총론』, 평양: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표 3] 해방 전후~6·25전쟁 전까지 문화유산과 ‘민족문화’ 계승 관련 김일성 ‘로작’

연번	‘로작’명	발행사항
1	조선혁명가들은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 조선인민혁명군 정치간부 및 정치교원들 앞에서 한 연설(1943년 9월 15일)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4.
2	평양의 자랑인 모란봉을 잘 꾸려야 한다: 모란봉을 돌아보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1946년 3월 2일)	『김일성 전집 5권』 증보판,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9.
3	朝鮮臨時政府樹立을 앞두고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委員長 金日成將軍 二十個政綱發表(1946년 3월 23일)	1946. ⁷³
	↓ (서문 일부 개작)	
	20개조 정강을 발표하면서 조선 인민에게 고향: 조선림시 정부 수립을 앞두고(1946년 3월 23일)	『김일성 전집 1권』, 평양: 로동당출판사, 1954.
	↓ (서문 개작)	
	20 개조 정강: 방송 연설(1946년 3월 23일)	『김일성 전집 1권』 영인본, 동경: 학우서방, 1963.

73 국립중앙도서관 해외한국관련기록물 SA 2005 6/51 조선민주당 강령 외, 2025. 11. 30.
<https://www.nl.go.kr>

[표 3] 해방 전후~6·25전쟁 전까지 문화유산과 '민족문화' 계승 관련 김일성 '로작'(계속)

연번	'로작'명	발행사항
4	문화와 예술은 인민을 위한 것으로 되어야 한다: 북조선 각 도 인민 위원회, 정당, 사회 단체, 선전원, 문화인, 예술인 대회에서 진술한 연설(1946년 5월 24일)	『김일성 선집 1권』, 평양: 로동당출판사, 1954.
	↓ (개작)	
	문화인들은 문화 전선의 투사로 되어야 한다: 북조선 각 도 인민 위원회, 정당, 사회 단체 선전원, 문화인, 예술인 대회에서 한 연설(1946년 5월 24일)	『김일성 선집 1권』, 영인본, 동경: 학우서방, 1963.
	↓ (일부 개작)	
5	문화인들은 문화 전선의 투사로 되어야 한다: 북조선 각 도인민위원회, 정당, 사회단체 선전원, 문화인, 예술인 대회에서 한 연설(1946년 5월 24일)	『김일성 저작집 2권』, 평양: 로동당출판사, 1979.
	민속무용 《봉산탈춤》 출연자들과 한 담화(1946년 6월 4일)	『김일성 전집 6권』, 증보판,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9.
6	민족문화예술을 더욱 개화발전시키자: 8.15해방 1주년 경축 예술종합공연을 보고 일군들과 한 담화(1946년 8월 14일)	『김일성 전집 7권』, 증보판,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9.
7	8.15 해방 1주년 기념 보고: 8.15 해방 1주년 평양시 기념 경축 대회에서(1946년 8월 15일)	『김일성 선집 1권』, 평양: 로동당출판사, 1954.
	↓ (개작)	
	8.15 해방 1주년 평양시 경축 대회에서 한 보고 (1946년 8월 15일)	『김일성 선집 1권』, 영인본, 동경: 학우서방, 1963.
	↓ (일부 개작)	
8	8.15 해방 1주년 평양시 경축 대회에서 한 보고 (1946년 8월 15일)	『김일성 저작집 2권』, 평양: 로동당출판사, 1979.
	북조선 로동당 강령	『북조선로동당황해도송림시당부 북조선 로동당 강령규약』, 북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1946. ⁷⁴

74 국립중앙도서관 해외한국관련기록물 Item #107 북조선 로동당 강령, 2025. 11. 30.

[표 3] 해방 전후~6·25전쟁 전까지 문화유산과 '민족문화' 계승 관련 김일성 '로작'(계속)

연번	'로작'명	발행사항
	↓ (서문 일부 개작)	
	북조선로동당 강령(1946년 8월 29일)	『김일성 저작집 2권』, 평양: 로동당출판사, 1979.
9	모란봉의 력사 유적과 유물 보존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평양시인민위원회 책임일군들에게 준 지시(1946년 9월 8일)	『김일성 전집 4권』, 평양: 로동당출판사, 1992.
10	친애하는 조선의 과학자, 문학과, 예술가들에게: 전체 문화인들에게 보낸 서한(1946년 9월 25일)	『김일성 전집 4권』, 평양: 로동당출판사, 1992.
11	강서고분은 우리 인민의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평안남도 강서군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1946년 11월 3일)	『김일성 전집 4권』, 평양: 로동당출판사, 1992.
12	축산업을 발전시키며 문학예술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한 결론(1947년 1월 9일)	『김일성 전집 8권』, 증보판,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20.
13	혁명군대의 참다운 문예전사가 되라: 보안간부훈련 대대부협주단 지도일군 및 배우들과 한 담화(1947년 4월 30일)	『김일성 저작집 3권』, 평양: 로동당출판사, 1979.
14	국립중앙력사박물관 일군들과 한 담화(1947년 8월 17일)	『김일성 전집 6권』, 평양: 로동당출판사, 1993.
15	문학예술을 발전시키며 군중문화사업을 활발히 전개할데 대하여: 북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한 결론(1947년 9월 16일)	『김일성 저작집 3권』, 평양: 로동당출판사, 1979.
16	금강산을 근로자들의 문화휴양지로 꾸리자: 외금강휴양소 일군들과 한 담화(1947년 9월 28일)	『김일성 저작집 3권』, 평양: 로동당출판사, 1979.
17	우리 인민의 정서와 요구에 맞게 민족무용을 발전시키자: 무용연구소 교원, 학생들에게 한 훈시(1948년 2월 8일)	『김일성 저작집 4권』, 평양: 로동당출판사, 1979.
18	조선물질문화유물조사보존위원회를 내올데 대하여: 내각부수상 홍명희에게 준 지시(1948년 10월 25일)	『김일성 전집 8권』, 평양: 로동당출판사, 1994.

[표 3] 해방 전후~6·25전쟁 전까지 문화유산과 '민족문화' 계승 관련 김일성 '로작'(계속)

연번	'로작'명	발행사항
19	민족문화유산을 잘 보존하여야 한다: 묘향산 박물관 및 휴양소 일군들과 한 담화(1949년 10월 15일)	『김일성 저작집 4권』, 평양: 로동당출판사, 1980.
20	약산동대를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꾸리자: 평안북도 녕변군 책임일군 및 녕변중학교 학생들과 한 담화(1949년 10월 16일)	『김일성 전집 10권』, 평양: 로동당출판사, 1994.
21	안악 제3호고분은 고구려의 력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귀중한 재보이다: 안악 제3호고분을 돌아보면서 황해도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1949년 11월 20일)	『김일성 전집 10권』, 평양: 로동당출판사, 1994.

이 내용은 김일성뿐만 아니라 부인인 김정숙과 당시 어린 나이였던 김정일도 함께 현지지도에 나섰다가, 김정숙 단독 혹은 김정숙과 김정일이 함께 현지를 돌아보았다는 기록을 통해 해방 직후부터 김일성 일가가 문화유산 보호에 관심을 기울였다는 서사의 바탕을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지지도와 연관된 '로작'도 7건 공개되었다. 또한, 문화유산 현지지도와 연관된 '로작'을 포함하여 '문화유산' 보호관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로작'과 '민족문화'와 '민족문화유산' 계승·발전과 연관된 '로작'도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이와 같은 '로작'이 대중에 처음 공개된 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3] 참조).

이러한 김일성 '로작'은 크게 문화유산 현지지도를 포함한 문화유산 보호관리와 관련한 것, 민족문화 혹은 민족문화유산 계승과 관련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표 4] 참조). 문화유산 보호관리와 관련한 '로작'은 현지지도 관련 7건, '물보' 조직 관련 1건으로 총 8건이 있다. 모두 1980년대 이후 김일성 관련 총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족문화' 혹은 '민족문화유산' 계승과 관련한 '로작'은 총 12건이 확인된다. 1940년대 발표시기와 공개시기가 같은 문건은 「20개정강」(훗날 「20개조정강: 방송연설」)과 「북조선로동당강령」이다. 소련과의 관계 변화에 따라 「20개정강」과 「북조선로동당강령」의 서문 내용이 일부 개작되었고, 「북조선로동당강령」은 1970년대에 김일성 '로작'

[표 4] 해방 전후~6·25전쟁 전까지 문화유산과 ‘민족문화’ 계승 관련 김일성 ‘로작’ 발표시기

구분		계	1940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1	년대	년대	년대	년대	년대	년대	년대	년대	년대
문화유산 보호 관리 관련	발표	8	8								
	공개						1	6		1	
민족문화 혹은 민족문화유산 계승 관련	발표	13	13								
	공개		2	2		5		1		1	2

으로 포함되었다. 「조선혁명가들은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 조선인민혁명군 정치간부 및 정치교원들 앞에서 한 연설(1943년 9월 15일)」과 같이 해방 이전 김일성의 연설로 명명되어 전해지는 ‘로작’도 1970년대에 들어 공개되었다. 또한, 2010년대 『김일성 전집』 증보판이 발행되면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로작’도 확인되었다.

후대에 공개된 ‘로작’들까지 모두 고려하면 해방 전후부터 6·25전쟁 전까지 김일성의 문화유산과 ‘민족유산’ 혹은 ‘민족문화유산’ 계승과 관련한 내용의 핵심은 ‘우리의 역사와 민족문화를 잘 알고 이것을 귀중히 여기며 훌륭한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선진문화를 섭취하여 우리 문화를 발전시키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배타적인 경향’과 ‘허무주의적 경향’을 경계하며 일제에 의해 억압받은 민족문화와 민족문화유산을 찾아내고 ‘진보적이며 인민적인 것’을 적극 살리고, ‘문화유적과 유물’ 또한 발굴하고 복구하도록 지시하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발행된 『김일성 전집』 증보판에서 처음 공개된 이 시기 ‘로작’ 4건 중 「평양의 자랑인 모란봉을 잘 꾸려야 한다: 모란봉을 돌아보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1946년 3월 2일)」를 제외한 3건은 김일성이 ‘민족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민족문화유산’의 ‘계승발전’을 강조한 내용을 담고

있다. ‘봉산탈춤’이나⁷⁵ ‘방아타령’과 ‘민족문화예술’의 ‘개화발전’을 언급하고⁷⁶ “문학예술부문에서 조선의 고유한 민족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킬” 것을⁷⁷ 요구한 이러한 ‘로작’의 공개는 2012년 제정된 북한의 「문화유산보호법」을 통해 법적·행정적인 보호에 포함된 ‘비물질문화유산’, 즉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보호가 정권 수립 초기 김일성의 지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정책의 역사성과 권위를 마련하기 위한 서사적 재구성 작업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미 공개된 김일성의 문건 중 일부에서 ‘문화유산’이나 ‘민족문화유산’ 계승과 관련한 내용으로 개작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개작의 대표적인 사례로 「문화와 예술은 인민을 위한 것으로 되어야 한다: 북조선 각 도 인민 위원회, 정당, 사회 단체, 선전원, 문화인, 예술인 대회에서 진술한 연설(1946년 5월 24일)」이 있다. 『문화유산』 1960년 4호에 수록된 「조선 민족학의 15년과 앞으로의 과업」에서 해방 직후부터 ‘조선로동당’이 전개한 “민족 문화 유산을 계승 발전시킬데 대한 정확한 로선”에 대한 김일성의 교시로 언급되기도 하였다.⁷⁸ 이후 「문화인들은 문화 전선의 투사로 되어야 한다」로 제목부터 수정되었고,⁷⁹ 그 내용에서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표 5〕 참조). 「문화와 예술은 인민을 위한 것으로 되어야 한다」(훗날 「문화

75 김일성(2019), 「민속무용 《봉산탈춤》 출연자들과 한 담화(1946년 6월 4일)」, 『김일성 전집 6권』 증보판,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pp. 346-347.

76 김일성(2019), 「민족문화예술을 더욱 개화발전시키자: 8.15해방 1주년경축 예술종합공연을 보고 일군들과 한 담화(1946년 8월 14일)」, 『김일성 전집 7권』 증보판,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pp. 53-55.

77 김일성(2020), 「축산업을 발전시키며 문학예술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북조선 립시인민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한 결론(1947년 1월 9일)」, 『김일성 전집 8권』 증보판,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20, pp. 240-246.

78 (1960), 「조선 민족학의 15년과 앞으로의 과업」, 『문화유산』 1960-4, p. 16.

79 김일성(1963), 「문화인들은 문화 전선의 투사로 되어야 한다: 북조선 각 도 인민 위원회, 정당, 사회 단체 선전원, 문화인, 예술인 대회에서 한 연설(1946년 5월 24일)」, 『김일성 전집 1권』 영인본, 동경: 학우서방, pp. 96-101.

[표 5] 북조선 각 도인민위원회, 정당, 사회단체 선전원, 문화인, 예술인대회에서 한 연설(1946년 5월 24일) 판본 비교

문화와 예술은 인민을 위한 것으로 되어야 한다 ⁸⁰	문화인들은 문화 전선의 투사로 되어야 한다 ⁸¹
四. 조선의 문화, 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쏘련을 위시한 진보적 세계의 민주주의문화 를 흡수하여 조선 인민에게 적합한 문화 발 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우리 문화인중에는 두가지 류의 사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순 조선 것만을 요구하며 외국 것은 다 나쁘다고 하는 사상을 가진 민 족주의적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며 다른 하 나는 조선 것은 다 나쁘고 서양 것만 다 좋다 는 관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두가지 사상은 다 옳지 못한 사상입니 다. 우리는 문화 전선에서 이상 두가지 그릇 된 관념과 사상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겠습니 다. 전자는 락후성을 그냥 보수하자는 것이요 배타적이며 민족주의적인 것입니다. 후자는 자기 민족 문화의 우수한 점을 부인하는 것이 며 덮어놓고 서양화하려는 것입니다.	4. 조선의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우 리의 훌륭한 문화유산을 계승하며 사회주의 나라들의⁸² 문화를 섭취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인들가운데는 그릇된 두가지 경 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고유한것만을 좋다고 하고 외국의 것은 다 나쁘다고 하는 경향이며 다른 하나는 이와는 반대로 우리의 것은 다 나쁘다고 하고 서양의것만을 좋다고 하는 경향입니다. 이 두 경향은 다 옳지 않습니다. 전자는 자 기의 락후한것까지도 그대로 보존하고 남의 좋은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배타적인 경 향이며 후자는 자기 민족문화의 우수한 점을 부인하고 덮어놓고 서양화하려는 허무주의적 경향입니다.

80 김일성(1955), 「문화와 예술은 인민을 위한 것으로 되어야 한다: 북 조선 각 도 인민 위
원회, 정당, 사회 단체, 선전원, 문화인, 예술인 대회에서 진술한 연설(1946년 5월 24일)」,
『김일성선집 1권』 재판,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pp. 102-103.

81 김일성(2019), 「문화인들은 문화전선의 투사로 되어야 한다: 북조선 각 도인민위원회, 정
당, 사회단체 선전원, 문화인, 예술인대회에서 한 연설(1946년 5월 24일)」, 『김일성 선집
6권』 증보판,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pp. 283-284.

82 “사회주의나라들의”는 1963년의 『김일성 선집 1권』에서는 “쏘련을 비롯한 선진 국가들
의”이었으나 1979년의 『김일성 저작집 2권』에서부터 “사회주의나라들의”로 수정되어
2019년 『김일성 선집 6권』(증보판)에도 그대로 유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부분
을 제외하면 1963년의 『김일성 선집 1권』에서 내용에 대한 개작은 완료되었으나 명확
한 비교를 위해 가장 최근 판본을 비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5] 북조선 각 도인민위원회, 정당, 사회단체 선전원, 문화인, 예술인대회에서 한 연설(1946년 5월 24일) 판본 비교(계속)

문화와 예술은 인민을 위한 것으로 되어야 한다	문화인들은 문화 전선의 투사로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문화인들은 자기의 고유한 문화중의 우수한 점을 발양하고 약한 점을 극복하며 다른 선진 국가들의 문화중에서 우수한 것들을 섭취하여 우리의 민족 문화와 예술을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 문화인들은 자기의 고유한 문화가운데서 우수한것은 계승하고 낙후한것은 극복하며 선진국가들의 문화가운데서 조선사람의 비위에 맞는 진보적인것들을 섭취하여 우리의 민족문화와 예술을 발전시켜야 할것입니다. 이것이 민족문화건설의 가장 정확한 길입니다.

(강조부분은 저자)

인들은 문화 전선의 투사로 되어야 한다」에서 민족문화유산 계승과 ‘민속학’ 연구나 문화유산 보호관리에 있어 방향으로 삼을 수 있는 내용은 김일성이 제시한 네 번째 임무이다. 개작 전과 개작 후 모두 기본적인 내용은 ‘조선의 것’과 ‘선진문화’를 받아들여 ‘민족문화와 예술’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에 서는 동일하다.

세부적으로 보면 문화와 예술 중심의 서술에서 개작 후 ‘민족문화’라고 명기하는 비율이 늘었고, 문화발전을 위해 “쏘련을 위시한 진보적 세계의 민주주의문화를 흡수”할 것에서 “우리의 훌륭한 문화유산을 계승하며 사회주의나라들의 문화를 섭취”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소련과 진보적 세계라는 표현이 ‘사회주의나라’로 바뀌면서 소련의 흔적을 삭제하였고, 이와 함께 ‘우리의 훌륭한 문화유산’ 계승을 추가하여 ‘우리 문화유산 계승’과 다른 국가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동일선상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우리 것을 고수하고 외국의 것을 나쁘다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배타적’이고 ‘민족주의적’이라고 표현하였다면 개작 후에는 ‘민족주의’라는 표현이 삭제되었다. 또한, 다른 나라 문화를 받아들이는 부분은 “다른 선진 국가들의 문화중에서 우수한 것들을 섭취”할 것에서 “선진국가들의 문화가운데서 조선사람의 비위에 맞는 진보적인것들을 섭취”로 변경되어 우수한 것이 아닌 “조

선사들의 비위에 맞는 진보적인 것”이 외부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중요한 요건이 되었다.

김일성 ‘로작’의 수정은 이해하기 쉽게 개작이 이루어질 당시 용어를 사용하여 변경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민족문화 계승과 관련하여 개작된 내용을 볼 때 ‘우리 민족의 것’을 강조하고 있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개작 전에는 조선 민족문화는 소련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보다 ‘낙후’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우수한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었다면, 개작 후에는 우수한 ‘우리 민족문화’를 계승하는 것과 함께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국가 문화를 받아들여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겠다는 의도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1950년대 후반부터 격화된 중소분쟁과 1960년대 악화된 북소 관계, 주체사상의 공식화라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김일성의 권위를 활용하여 북한이 해방 직후부터 실시한 민족문화 계승·발전에서 외부의 영향을 축소하고자 하는 시도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김일성 ‘로작’에서 꾸준히 강조되던 ‘우리 민족이 이룩한 우수한 문화전통’과 ‘애국주의’와의 연결을 뚜렷하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본 논문은 6·25전쟁 전까지 북한 정권 수립 초기 문화유산 보호관리에 대한 당시 사실과 후대 구축된 김일성의 ‘령도’ 서사 사이의 간극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최고지도자의 권위를 강화하고, 북한의 문화유산 보호관리의 역사를 어떻게 재구성하였는지 고찰하였다.

정권 수립 초기 유형문화유산 보호관리의 법적·행정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은 당시에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와 ‘소련’의 성과이며 미군정하의 남한보다 앞서나가기 위한 조치였고,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훼손된 유형문화유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보존하기 위한 활동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후대에 이와 관련한 김일성의 담화 공개를 통해 이를 김일성의 ‘령도’에 의한 활동으로 귀결시켰다. 김일성의 「국립중앙력사박물관 일군들과 한 담화(1947년 8월 17일)」와 「조선물질문화유물조사보존위원회를 내올데 대하여: 내각부수상 홍명희에게 준 지시(1948년 10월 25일)」와 같은 ‘로작’을 1990년대 공개한 것은 북한 정권 수립 초기 박물관의 구성과 문화유산 보호관리 조직 형성에 있어 김일성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그리고 김일성의 현지도와 연관 지어 박물관의 창립일을 소급적용한 것은 김일성 중심의 문화유산 보호 서사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뿐만 아니라 ‘청암동토성’ 일화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선전함으로써 김일성을 ‘문화유산의 수호자’로 형상화하기도 하였다. 또한, 소련의 선진문화를 받아들이는 것과 민족문화의 계승발전이 공존했던 김일성의 ‘로작’을 민족문화의 우수성과 계승에 더 큰 방점을 두고 개작하여 북한은 정권 수립 초기부터 민족문화의 계승발전에 힘썼다는 주장을 통해 ‘민족적 정통성’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김일성의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로작’의 공개를 통해 김정은 집권 이후 시작된 무형문화유산의 법적·행정적 보호관리의 기원을 북한 정권 수립 초기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였다. 이처럼 북한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최고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보를 공개하거나 업적을 정리하는 글을 통해 북한 당국이 원하는 유·무형문화유산 모두에 대한 보호관리 서사를 구축하고 역사적 정통성을 확보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해방 직후 시기의 문화유산 보호관리의 서사가 어떻게 ‘재구성’되는지에 집중하기 위해 연구 범위를 6·25전쟁 이전 시기로 한정하였다. 향후 시기를 확장하여 문헌의 공개 시점과 내용의 변용 양상을 추적한다면, 현행 「민족유산보호법」 체계로 이행해 온 북한의 ‘민족유산’ 보호관리 정책의 변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자료

김광운(2018), 『북조선 실록 년표와 사료』 6·7·8·12·14·15·18, 서울: 코리아 데이터 프로젝트.

『조선총독부관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5. 11. 1., <https://stdict.korean.go.kr/>

국립중앙도서관 해외한국관련기록물, 2025. 11. 30., <https://www.nl.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 12. 31., <https://law.go.kr/>

『김일성 선집』, 『김일성 선집』 영인본, 『김일성 저작집』, 『김일성 전집』, 『김일성 전집』 증보판.

『김정일 선집』.

『로동신문』, 『민주조선』, 『통일신보』.

『법령공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공보』.

『순간북조선통신』.

『조선중앙년감』.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1991), 『문학예술사전(중)』, 평양: 과학사전출판사.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1989), (『조선유적유물도감(3) 고구려편(1)』, 평양: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2009), 『기록영화 위대한 력사 제21부, 유구한 민족사를 빛내 이시여』, 평양: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

UNESCO(2014), *Periodic report No. 01040/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논저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위음(2003), 『북한연구방법론』, 서울: 도서출판 한울.

권혁희(2021), 「북한의 문화유산 담론의 창출과 변화: 북한 체제 성립 초기부터 1970년 대까지를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17-1.

김용환·전영선(1997),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에 대한 연구: 김일성 부자의 교시와 법령을 중심으로」, 『민족학연구』 2, 1997.

남보라(2015), 「국가건설과정의 북한 문화유산관리 연구: 1945~1956년을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남보라(2024), 「북한의 무형문화유산 보호관리 연구: 김정은 시기 ‘비물질문화유산’ 제

- 도화 과정을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류승주(2022), 「해방 직후 북한 문화유산 보존사업과 조선물질문화유물조사보존위원회」, 『한국근현대사연구』 103.
- 박윤희(2019), 「북한 조선미술박물관의 설립 경위와 초창기 전시 체제」, 『인문과학연구』 29.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연구처 엮음(2001), 『북한현대사 문헌연구』, 서울: 백산서당.
- 김영숙(2022), 「새 조국건설시기 력사박물관을 창설하도록 이끌어주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 『력사과학』 2022-4.
- 김정문(2011), 「고구려 청암동토성」, 『조선고고연구』 2011-3.
- 김찬홍(2016), 「새 조국건설시기 력사박물관들을 창설하고 대중교양거점으로 튼튼히 꾸리기 위한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 민족문화유산』 2016-2.
- 남일룡(2013), 「청암동토성에서 발굴된 고구려건축지와 건물벽화에 대하여」, 『민족문화유산』 2013-2.
- 남일룡(2011), 「새로 발굴된 청암동토성의 북쪽성벽」, 『조선고고연구』 2011-4호.
- 남일룡·최경찬(2001), 「청암동토성에 대하여 (3)」, 『조선고고연구』 2001-2.
- 남일룡·최경찬(2000), 「청암동토성에 대하여 (2)」, 『조선고고연구』 2000-1.
- 남일룡·최경찬(1998), 「청암동토성에 대하여 (1)」, 『조선고고연구』 1998-2.
- 리광철(2012), 「[백두산3대장군과 민족문화유산] 민족문화유물보존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민족문화유산』 2012-3.
- 리광희(2004), 「청암동토성에서 새로 발견된 수기와와 년대」, 『조선고고연구』 2004-1.
- 리주현·한은숙(2009), 『조선고고학총서 1 총론』, 평양: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 리철·리기웅·김명철(2005), 『문화유산애호가들의 벗』, 평양: 조선문화보존사.
- 리태진(1949), 「문화유물보존사업에 대하여」, 『문화유물』 1.
- 본사기자(2002), 「청암동성」, 『민족문화유산』 2002-4.
- 저자미상(1997), 「[발굴소식] 새로 발굴된 청암동토성」, 『조선고고연구』 1997-4.
- 정형철(2010), 「[백두산3대장군과 민족문화유산] 민족문화유산을 빛내여주신 불멸의 령도」, 『민족문화유산』 2010-2.
- 한길연(1949), 「김일성종합대학박물관」, 『문화유물』 2.
- 황옥(1958), 「평양《청암리 토성》부근에서 발견된 고구려 금동 유물」, 『문화유산』 1958-5.
- 황옥(1957), 「거섭 3년명 칠반(居攝三年銘漆槃)」, 『문화유산』 1957-6.

ABSTRACT

An Examination of the Construction of Kim Il Sung's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Leadership' Narrative before the Korean War

Nam, Bora*

This thesis aims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s of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nd management from the immediate post-liberation period, when the North Korean regime was first established, to the period preceding the Korean War, and to examine the gap between these historical realities and the Kim Il Sung 'Leadership' narrative constructed in later years. Since the enactment of The Law on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in 2012, North Korea has strengthened policies for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national heritage,' inclu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hile explaining their origins by linking them to Kim Il Sung's 'Leadership' in the immediate aftermath of liberation.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materials produced prior to the Korean War and those published in later periods, this study elucidates how North Korea reconstructed its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narrative.

* Research Professor, The Simyeon Institute for North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Contemporary documents indicate that, during the early stage of North Korea's regime formation, heritage protection activities were concentrated on legal and administrative measures centered on tangible cultural heritage, such as the enactment of regulations and the establishment of management organizations, while references to Kim Il Sung's public guidance in this area remained limited. From the 1980s onward, however, North Korea retroactively revised museum founding dates to align with Kim Il Sung's on-site guidance or excavated preservation anecdotes related to 'Cheongam-dong Toseong,' thereby constructing an image of Kim Il Sung as a 'guardian of cultural heritage.' In addition, the subsequent disclosure or revision of Kim Il Sung's 'works' can be interpreted as an effort to endow policies for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national heritage' with historical depth and authority. Accordingly, the 'Leadership' narrative of Kim Il Sung's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should be understood not only as an exercise in embellishing the past but also as the construction of a historical foundation intended to promote the legitimacy and orthodoxy of The Law on the Protection of National Heritage and 'national heritage' in the era of Kim Jong Un.

Keywords Kim Il Sung 'Leadership' Narrative, North Korean Cultural Heritage Policy, National Heritage, *The Law on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The Law on the Protection of National Heritage*, Source Criticism